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5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 제명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제명 변경

- 1) 「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⇒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(안 제1조)
- 2)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⇒ 「물환경보전법」(안 제1조)
- 3)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(안 제4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
- 2) 「물환경보전법」
- 3)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9. 26. ~ 10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(2019.11. 7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”를 “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”로,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및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 및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급 할”을 “지급할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및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신고대상 및 방법) ① 신고 대상은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및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등의 <u>환경관련</u>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,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·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</u>」 제15조 -----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신고대상 및 방법) ① ----- -----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 ----- ----- <u>환경 관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② (생략)

제4조(접수 및 처리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)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(이하 "포상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9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접수 및 처리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-----  
-----.

제6조(포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지급할 -----.  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시행규칙) -----  
----- 필요 -----  
-----.

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, 그 의안의 시행에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

### 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환경과 류성훈 (☎ 3153-9274)